

백천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백천장학(문화)재단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

가. 본 법인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나. 대상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나이, 성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본 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는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교, 대학원의 정규과정(야간 등의 특수대학, 특수대학원 제외)에 재학하는 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보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선발)

가. 장학생은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본 재단의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4조(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당해 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장학금의 총액을 결정한다.

제5조(수혜자의 부담)

가. 장학금 수혜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나. 본 재단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혜자에게 장학생 선발 시 제출된 학업계획서에 따른 학업성과물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학위원회의 구성)

장학위원회는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본 재단의 이사와 실무책임자 및 교육계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장학위원회의 기능)

가. 장학위원회는 과반수이상 참석 2/3이상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교별, 과정별 대상인원과 지급액의 결정
2. 각급 학교별 피 추천 인원수의 결정
3. 대상인원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나. 장학위원회는 실무책임자에게 다음을 위임할 수 있다.

1. 장학생 친목단체의 구성과 지도
2. 회지의 발행과 보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가. 장학금 지급은 수혜학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러나 학교의 요구가 있을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수혜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해당학교 명의의 금융계좌로 일괄 송금할 수 있다.

다. 장학금 지급은 1학기, 2학기 년 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대학, 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에서 중단추천장학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재단은 입학 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추천서류 없이 졸업 시까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각 과정은 각 해당 수업년한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사 4년, 석사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석사2년)

바. 학사과정을 이수한 백천 장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성적 우수자(학사평균 4.0 이상)에 한해 연속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지급중지)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상자가 승려인 경우 중단으로부터 탈종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전(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5점 기준 3.0점 미달인 경우

(성적미달 1회 시 경고하고 2회 시에는 장학생 자격을 박탈한다.)

라. 휴학중인 경우

① 군 복무기간

② 기타 질병 등의 경우 최장 1년만을 인정한다.

마.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바. 타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사.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는 경우

제10조(사무처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재단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입생

- 학업계획서(재단양식(양식번호BF001))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사본
- 학교장(주임교수) 추천서
- 수혜자 통장 사본

나. 재학생

- 학업계획서(재단양식(양식번호BF001)) : 기 제출분과 변동 사항 발생시
- 전학기 성적증명서
- 등록금고지서 사본 - 학업성과물(필요시)

